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편집 : 문 화 공 보 관

전화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공합발간실

전화 725-6090

제 863 호

1981.10.15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36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3
제 369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4
제 370 호 :	도시계획용도지구 (교도제한) 지적승인	4
제 371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5
제 372 호 :	육류연동가격고시.	9
제 37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9
제 374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착승인	11
제 375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	12

◎ 공 고

제 265 호 :	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일부완료공람공고	12
제 266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완료공고	13
제 267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공고	13
제 269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	14

◎ 사 령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892

교	지
---	---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36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54 호 (76.12.30) 로 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. 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종로구홍지동70번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상명여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교사 증축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1) 토지면적 : 4,625㎡ (1,399평)

2) 건축계획 :

가)건축면적 : 877.32㎡ (265.4평)

나)연면적 : 2,946.94㎡ (891.4평)

다)구조 : 철근콘크리트라멘조

라. 사업시행자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 번지

성명 : 학교법인 상명학원

이사장 배 상 명

마. 사업기간 : 착수년월일 -

허가일로부터

20 일 이내

준공년월일 -

1982. 7.30

바. 수용 노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학 교 명	소재지	지목	지적	소유자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상명여자사범대 학부속국민학교	종로구육인동 70 번지	학교 용지	4,625㎡ (1,399평)	학교법인상명 학원 이사장	없음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: (상동)

아. 공사설제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6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시고시 제 109 호 (81.4.7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되고 동고시 제 270 호 (81.7.16)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0.13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시행지 : 성동구육수동

227번지의 20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
(학교)

육정중학교

다. 사업의면적 : 14,367 평방미터

(4,353 평)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 : 81.11.1

2) 준공 : 83.10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
사.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명면도 및 공사설계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70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고도제한)

지적승인

1. 김포가도 (공항로) 주변의 도시계획용도지구 (고도제한) 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0.13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고도지구 (고도제한) 지적승인조서					
구 분	위 치	구 간		면 적 m^2	고도제한범위
		폭 (M)	연장(M)		
고도지구	공향동 - 내발산동 (공향로비상환 주로주변구간)	150	2,950	442,500	도로진행방향 : 표고 0 도로직각방향 : 표고 0 (건축전면통제)
고도지구	공향, 과해, 방화 개화, 내발산, 외발산, 마곡, 가 양, 등촌, 화곡 염창동각 1 부지역	활주로구간 경계양측각 500	2,950	2,950,000	도로직각방향 : 구배 1/7
		도로연장 구간 : 양측 1,150	4,000	4,600,000	도로진행방향 : 구배 1/35 도로직각방향 : 구배 1/7
합 계		1,150	6,950	7,992,500 m^2	
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371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
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10 호 (81.4.7) 및 동고시 제 182 호 (81.5.18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시설 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제 25 조,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

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 다.

1981.10.1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7 -1 과 26 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명칭 : 삼성국교

다. 사업의규모 및 면적 : 12,595 m^2 (3,810 평)

다. 사업시행자 주소. 성명 : 서울특별시
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
착수 : 시행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
준공 : 착수일로부터 2 년 이내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
지. 지번. 지목. 지적 및 소유권

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사.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
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
주소. 성명 : 별첨

아. 시행허가 설계도서 : 별첨
(생략)

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.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해관계인
					주 소	성 명	
서울 신성 국민 학교	관악구 신림동	117-1	대	2,274 중 1,224	용산구용문동 32-10	정 상 진	
		-7	"	298 중 221	"	"	
		-19	"	166	"	"	
		-20	"	531 중 386	"	"	
		-21	"	1,445 중 1,172	"	"	
		117-11	"	208	관악구신림동 120	전 봉 경	
		-12	"	1,183 중 1,015	"	"	
		-25	"	205 중 128	"	"	
		118-1	"	297 중 227	관악구신림동 125-13	"	

근저당 2 건
(중소기업
은행 종로
지점)

근저당 2 건
지상권 1 건
관악단위
농협조합

학교명	소재지	지 원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래 관계인
					주 소	성 명	
서울 신성 국민 학교	관악구 신림동	119-8	잡	288종	신림동 120	전봉경	신림동 118-9 김익배와 지분등기
				53			
		119-8	"	235	신림동 118-9	김익배	
		118-7	배	896종	"	"	
				531			
		118-1	"	1,210	신림동 118-9	"	가등기 1 건 (신림동 118-9 (김경식)
		118-9	"	655	신림동 118-9	"	근저당 (국 민은행 간석 동지점)
		-10	"	7	신림동 118-9	"	가등기 (김경식)
		-14	"	476	신림동 118-9	"	근저당 (한 국주택은행 신림, 장위 동지점)
		-29	"	185	"	"	118-8 에 서 분할
		119-5	잡	1,263 종	"	"	가등기 (김경식)
		-6	전	1,567	"	"	"
		115	"	198	"	"	119-6 에 서 분할
		117-4	배	102	관악구신대방동 652-3	김병윤	
		118-4	"	665	"	"	압류 (관악 구청)

18-8 재 863 호 시

보 1981.10.15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해관계인
					주 소	성 명	
서울 신성 국민 학교	관악구 신림동	117-5	답	93	종로구서린동 97	백상규	압류 (관 악구청) 가등기 (신 림동 118 -9 김경식)
		118-3	대	1,174 중 299	신림동 118-9	김태윤	
		118-16	"	340 중 337	"	김혜연	
		120-48 836-6 838-9	공 도 대	173 중 82 841 61	서울 특별 시 국 유 지		
	계	27 필지		12,595 M ²			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

명칭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 이외의 권라명세	
서울신성 국민 학교	관악구 신림동	117- 1	대	2,274 중	1,224	없 오
		- 7	"	289 중	221	
		-19	"	166		
		-20	"	531 중	386	
		-21	"	1,445 중	1,172	
		117-11	"	208		
		-12	"	1,183 중	1,015	
		-25	"	204 중	128	
		118- 1	"	297 중	227	
		119- 8	잡	228 중	53	
		119- 8	"		235	
		118- 7	대	896 중	631	
		- 8	"	1,210 중	1,210	
		- 9	"		655	
		-10	"		7	
-14	"		476			
-29	"		185			
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	적	소유자 이외의 권 리 명 세
서울신성 국민학교	관악구 신림동	119-5	잡	1,263 중	151	
		-6	전	1,567 중	1,567	
		-15	전		198	
		117-4	대		102	
		118-4	대		665	
		117-5	답		93	
		118-3	대	1,174 중	299	
		116-16	대	360 중	337	
		120-48	공	173 중	82	
		836-6	도		841	
		838-9	대		61	
	계			12,595M ²		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372 호

육류 연 동 고 시

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
부 훈령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
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
이 고시한다.

1981. 10. 14

서울특별시 장 박 영 수

1. 육류연동가격

돼지고기 (정육 600 그램당) 2,250원

2. 시행일

1981. 10. 15부터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37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09 호 ('81.
4. 7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
결정 및 동고시제 172 호 ('81.5.
12)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
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번
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
('79.12.10) 에 의거 도시계획
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
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
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
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

18-10 제 863 호 시

보 1981.10.15

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0. 1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동구길동 34-1 외
17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명칭 : 서울신영국민학교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대지면적 : 21,633㎡
규모 : 건축면적 - 2,287.3㎡
건축연면적 - 8,985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
1-163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고육감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수년월일 : 시행허가일로부터
3개월 이내

준공예정일 : '84. 3. 30
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: 별첨 (생략)
사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생략)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
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
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(별첨)
첨부 : 토지조서 1부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이해관계인
					주소	성명	
서울신영국민학교	강동구길동	51-3	전	16,129 중 814	강동구길동 51-4		근저당 조흥은행
		51-5	대	172 중 172	"		"
		49	잡	3,260 중 177	"		"
		52-7	전	102 중 102	성북구성북동 1-11	박용근	지상권 설정 조흥은행
		48-1	답	1,117 중 826	종로구혜화동 15-183	박용성	
		41	"	3,008 중 753	"		
		48-4	"	4,268 중 1,805	종로구연지동 270	박용현	
		43-2	전	1,079 중 1,079	"		
		43-1	"	564 중 80	"		
		48-3	답	3,858 중 3,850	종로구남대문로 5가 166		근저당 대한생명보험
					신동아건설(주)		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해관계인
					주 소	성 명	
서울 신명길 국민 학교	강동구 길 동	48-2	답	3,878 중 3,285	중구남대문로 5가 166 신동아건설(주)		관 저 당 대한생명보험
		44-2	전	2,255 중 2,255	" "		"
		40	"	870	" 신동아건설(주)의 1인		"
		산31	임	19,140 중 1,456	중구남대문로 5가 166 신동아건설(주)		"
		42	전	1,871 중 1,871	" "		"
		산32-3	임	6,545 중 867	" "		"
		36-2	답	14	용산구원효로 1가 17-5	홍순익	
		34-1	구거	1,557 중 1,157	서울특별시		
	계	18필지		21,433			

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4 호

도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0 호(79.10.15)
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
을 지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
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53 호

(79.12.10) 의 위임 규정에 의거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
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0. 15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1		10 m	200 m	구로동 531	구로동 537	
"	"	2	9	8 m	80 m	가리봉동 1-11	구로동 711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75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도로)결정및변경결정

1.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,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0.12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

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0.15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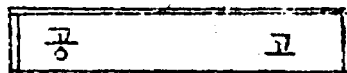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상암국민학교	마포구상암동 126-1 일대	11,931㎡	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2류	.8 m	122 m	상암동 126-1	상암동 129-2	
변경	"	"	"	"	"	"	폐지

다. 도면: 별첨(생략)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65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일부완료공람공고

1. 당시에 서 시행한 영동토지 2 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
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공람공고에 공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는 이공고로 갈음 한다.

가. 사업명: 영동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면적: 3,954.237 평중 3,500,000 평

다. 공람기간: 81.10.13-81.10.27

(14일간)

1981.10.13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66 호

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7 호 (79.9.17) 로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1.10.13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시행지 : 성동구 사양동 510-8 외 5 필지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
3. 사업기간 : 79.9.17-81.7.31
4. 사업규모 : 총부지면적 5,510 평방미터
5. 허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7 호 (79.9.17)
6. 도시계획사업시행사 : 서울특별시 중구남산동2가11-5 한국전력관리 본부장 김 차 경
7. 준공도면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67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2 호 (80.9.6) 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된 도봉구 상계동 353-14 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공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0.13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상계동 358-14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
- 다. 사업의규모 : 폭 8 m, 연장 110 m 면적 880 m²
- 라. 사업시행사주소 : 경기도 남양주 군화도면 녹촌리 산 79 성광이치현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
 - 1) 착수년월일 : 1980. 9.24
 - 2) 준공년월일 : 1981.10
- 바. 준공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69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5 호 ('80.12.27) 로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76 호 ('81.3.16) 로 시행변경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'79.12.10) 제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공사완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0.14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토지 구획정리지구 47보력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1)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
 - 2) 명칭 : 현대종합시장 (소매시장)
- 다. 사업의 규모
 - 1) 지 적 : 1,000 평
 - 2) 건축내역 : 연면적 4,010.96 (일층면적 1,493.01)
- 라. 사업시행사 : 강동구 암사토지 구획정리지구내 47 보력 동암상사(주) 공동대표 권만현, 김범수
- 마. 사업시행기간 : 81.1.27-81.10.8

바. 준공도면 : 생략

사 령

◎ 1981년 10월 12일자령제 396 호

연 료 과 임 우 빈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
(81.10.12-82.1.11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)

령제 397 호

연 료 과 방 중 권
지방행정주사
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
(81.10.12-82.1.11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)

연 료 과 정 인 국
지방행정주사
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
(81.10.12-82.1.11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)

◎ 1981년 10월 9일자 령제 394 호 공무원 교육원 이 종 원 행정 사무관 사망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령제 402 호 수원 시설 과 임 종 만 지방토목기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령제 404 호
◎ 1981년 10월 14일자 령제 398 호 교통 행정 과 정 재 찬 지방행정사무관 복직을 명함. 4 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마포구운영과장 김 종 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, 동법 제 51 조 및 동법제 55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에 의거 정직 3 월에 처함. 마포구주택과 이 재 혁 지방행정주사
◎ 1981년 10월 3일자 령제 400 호 기 진 과 김 준 배 지방기계기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령제 401 호	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동법 제 51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.2 호에 의거 견책 에 처함 강서구화곡본동 최 욱 만 지방행정서기
하수 시설 과 정 방 응 지방전기기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	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동법 제 51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.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교통국운수2과 김 경 욱
지방행정주사보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동법 제 53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에 의거 정직 1 월에 처함.

강남구보건소 진 석 환
지방행정서기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.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주택행정과 광 우 영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, 동법 제 53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구로구위생과장 김 만 식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.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내 무 국 이 강 준
행정서기

국가공무원법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78 조 제 1 항제 3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종로구산업과 박 정 웅
행정서기

국가공무원법 제 56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7 조 제 1 항 1.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◎ 1981 년 10 월 21 일자령제 405 호

경남양산군장안면 구 도 순
지방행정서기

서울북별시 전입을 명함.
구로구 근무를 명함.

◎ 1981 년 10 월 14 일자령제 407 호

영등포구세무1과 박 수 철
지방행정사무관

감사담당관 감사 4 제장에 포함.

령제 408 호

종 무 과 장 문 학
지방행정주사

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.

영등포구종무과 김 동 원
지방행정주사

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.

동작구사회과 박 병 하
지방행정주사

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.

행 정 과 지방행정주사보	조 유 근	주 로 구 지방대장정리원	신 광 숙
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.		교통행정과	
○ 1981년 10월 15일자		성 동 구 지방민원보조원	양 희 경
강 동 구 지방대장정리원	조 현 주	동대문구	
서대문구		총 무 과 지방대장정리원	김 은 희
서 대 문 구 지방민원보조원	심 연 홍	성 동 구	
강 동 구		지하철건설본부 지방대장정리원	강 준 사
새 중문화회관 지방대장정리원	심 화 경	용 산 구	
상 정 과		용 산 구 지방민원보조원	신 영 희
교통행정과 지방대장정리원	문 미 영	주택행정과	
새 중문화회관		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대장정리원	이 효 실
성 북 구 지방보조수	문 미 환	마 포 구	
종 로 구		마 포 구 지방민원보조원	윤 영 숙
총 무 과 지방대장정리원	송 인 숙	영등포구	
성 북 구			

18-18 제 863 호

시

보

1981.10.15

영 등 포 구 지방민원보조원	윤 병 임	도 봉 구 지방민원보조원	이 정 이
감사담당관		영등포구	
감 사 담 당 관 지방대장정리원	양 승 남	영 등 포 구 지방민원보조원	남 동 수
동 작 구		도 봉 구	
동 작 구 지방대장정리원	강 미 선	기 회 담 당 관 지방대장정리원	김 해 선
관 악 구		세종문화회관	
중 구 지방민원보조원	김 인 숙	서 울 특 별 시 장	
구 로 구			
구 로 구 지방대장정리원	지 정 실		
강 남 구			